

# NEWSLETTER

November 2021

산업안전 · 중대재해팀 / 노동 그룹  
Occupational Safety · Major Accidents Team  
/ Labor & Employment Group

## CONTACT



변호사 진창수

T: 02.6386.6290  
E: [changsoo.jin@leeko.com](mailto:changsoo.jin@leeko.com)



변호사 배재덕

T: 02.772.5960  
E: [jaedeog.bae@leeko.com](mailto:jaedeog.bae@leeko.com)



변호사 설동근

T: 02.772.4881  
E: [tongkeun.seol@leeko.com](mailto:tongkeun.seol@leeko.com)



변호사 송현석

T: 02.772.4691  
E: [hyunseok.song@leeko.com](mailto:hyunseok.song@leeko.com)



변호사 이화성

T: 02.772.4316  
E: [hwasung.lee@leeko.com](mailto:hwasung.lee@leeko.com)

## 고용노동부,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배포 (2021. 11. 17.)

- 고용노동부는 2022. 1. 27.부로 시행되는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, **중대재해처벌법**)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1. 11. 17. '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'를 작성·배포하였습니다.
- '중대재해처벌법'은 경영책임자 등이 위 법에 따른 안전·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.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'처벌 규정'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함으로써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등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·보건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. 따라서 각 기업에서는 '중대재해처벌법'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.
- '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-중대산업재해 관련'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목차	주요 포함 내용	비고
1. 법의 목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정 이유</li> <li>법의 목적</li> <li>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및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과의 관계</li> </ul>	
2. 정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법 제2조(정의) 부분의 법률 용어 해설</li> </ul>	
3.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적용범위: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에 적용</li> <li>적용시기: 2021. 1. 27.부터 시행, 단 이 법 시행 당시 ① 개인사업주, ②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과 ③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024. 1. 27.부터 시행</li> </ul>	

4.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(제4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</li> <li>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</li> <li>■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</li> <li>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선·시정을 명한 사항</li> <li>■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</li> </ul>	
5.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(제5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제3자에게 도급, 용역,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4조의 조치의무</li> <li>■ 시설, 장비,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</li> </ul>	
6.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대한 서면의 보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함</li> <li>■ 「소상공인기본법」에 따른 소상공인은 서면 보관의무가 제외됨</li> </ul>	
7.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자 등의 처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법적성격</li> <li>■ 범죄의 구성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의무 위반</li> <li>② 법 제4조 또는 제5조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 (미필적 고의 포함)</li> <li>③ 사망이나 부상 또는 질병이라는 결과 발생</li> <li>④ 법 제4조 또는 제5조 의무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 인정</li> </ul> </li> <li>■ 가중 처벌</li> <li>■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</li> </ul>	
8. 안전보건교육의 수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교육의 수강</li> <li>■ 안전보건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</li> </ul>	
9.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공표 대상</li> <li>■ 공표 내용</li> <li>■ 공표 절차</li> <li>■ 공표 방법</li> </ul>	
10.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</li> <li>■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</li> <li>■ 국회에 대한 보고</li> </ul>	

- 저희 법무법인(유) 광장은 산업안전·중대재해팀을 선제적으로 구성하여 ‘중대재해처벌법’의 시행에 대응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현장에서 다양한 사건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와 관련된 법률분야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(유) 광장의 좌측 담당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,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서비스와 자세한 안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.



**별첨: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**

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**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**

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, 법무법인(유)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 법무법인(유)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[수신거부](#)를 클릭해 주십시오.

**Lee & KO** 법무법인(유) 광장

뉴스레터 더 보기

COVID-19 자료실

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(우 04532) | Tel: 02-772-4000 | Fax: 02-772-4001/2 | [www.leeko.com](http://www.leeko.com)